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3. 1. 25.(수)

제 목

930억 원대 주가조작·배임 등 사건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이사 등 4명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 25.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ㄱ○○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공범인 A사 부사장 2명 `22. 11. 25.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계속 중임
- ㄱ○○ 일당은 A사를 무자본 인수 후,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를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사기적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약 2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A사 및 관계사들의 자금 또는 이 회사들에게 돌아갈 이익 합계 약 595억 원을 가로 채고, A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132억 원 자금을 빼돌리고, 이 사건 수사 중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음

*면봉, 튜브, 배양액 3부분으로 구성되어 면봉으로 채취한 바이러스를 배양액이 담긴 튜브에 담아 진단을 위한 수송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훼손되거나 죽지 않도록 보관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기임

1

피고인

- ㄱ○○ [49세, A사(코스닥 상장) 대표이사](구속)
 - ㄴ○○ [48세, B사(비상장) 대표이사](구속)
 - ㄷ○○ [42세, C사(비상장) 및 D사(코스닥 상장) 대표이사](구속)
 - ㄹ○○ [35세, E사(비상장) 대표이사](구속)
- ※ ㅁ○○[A사 부사장(CFO)], ㅂ○○[A사 부사장]은 '22. 11. 25. 구속기소
- ※ B사, C사, D사는 의료기기 및 그 원부자재 생산·유통 범인으로 A사 또는 A사 사주 측에서 지배·운영

2

공소사실 요지<별첨>


3

수사 경과

- '22. 1. 17.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이첩사건 접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 ※ '21. 1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A사 본사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 '22. 5. 18.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폐지)
- '22. 9. A사, B사 공장,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 '22. 10. 31. A사 부사장 ㅁ○○, ㅂ○○ 구속(11. 25. 구속기소)
 - ※ 5명 구속영장 청구하여 2명 발부, ㄴ○○, ㄷ○○ 등 3명 기각
- '22. 11. C사, D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 '22. 12. A사 대표이사 ㄱ○○, C사 대표이사 ㄷ○○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4명 영장 발부(12. 28. ㄱ○○ 구속, '23. 1. 4. ㄴ○○, ㄷ○○, ㄹ○○ 구속)
- '23. 1. 25. ㄱ○○, ㄴ○○, ㄷ○○, ㄹ○○ 구속기소

4

이 사건의 특징 및 향후 계획

- 이 사건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B사 경영진이었던 100 일당이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 인수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제조·판매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조작(A사 주가는 '20. 3. 19. 종가 775원에서 '20. 9. 9. 종가 9,140원까지 1,079% 상승) 하고 A사와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가로채 약 809억 원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A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자금 132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로 A사와 D사를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고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중대 사건임
 - ※ A사와 D사는 '22. 3.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정지 처분 (소액주주들에게 합계 약 2,696억 원 상당 손해 위험 발생)
- 100 일당은 주가조작 범행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결과 및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과감하였음
- 또한, 100 일당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치 미국의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의 이메일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조사 및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수사의뢰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100 일당의 주가조작 자본시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과정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국(FD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2개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거액의 횡령·배임 등 범행까지 규명하여 구속기소한 사례임
-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여된 A사의 실사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임 

< 별첨 : 공소사실 요지 >

순번	피고인	직책 처분	공소사실/죄명
1	ㄱ○○	A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p>① ㄴ○○ 등과 공모, '19. 7.~9. A사가 A사 사주 측 보유 B사 주식을 고가 매수하여 A사에 약 182억 원 손해 [특경법위반(배임)]</p> <p>② ㄴ○○, ㄴ○○, ㄴ○○ 등과 공모, '20. 3.~9.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허가', '검체 수송배지 MI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배포·공시 등 방법으로 주가 부양하여 약 214억 원 부당이익 취득, 그 과정에서 의사서명 위조, 시험결과 조작한 보고서 등 식약처·MIFDA 제출하여 관련 허가 등 취득 [자본시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p> <p>③ ㄴ○○ 등과 공모, '20. 9. A사가 중도상환청구로 회수한 CB를 A사 사주 측 등에게 헐값 양도하여 A사에 약 360억 원 손해[특경법위반(배임)]</p> <p>④ ㄴ○○, ㄴ○○ 등과 공모, '20. 10.~12. D사가 A사로 부터 검체수송배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사에 132억 원 손해[특경법위반(배임)]</p> <p>⑤ ㄴ○○ 등과 공모, '20. 9.~'21. 1. A사의 관계사들 자금 약 53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 임의 사용[특경법위반(횡령)]</p> <p>⑥ '22. 12. ㄴ○○ 등에게 검찰의 A사 관계사들 이메일 압수영장집행 사실을 알리며 이메일 삭제 지시[증거인멸교사]</p>
2	ㄴ○○	B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p>① ㄱ○○, ㄴ○○, ㄴ○○ 등과 공모, '20. 3.~9.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허가', '검체 수송배지 MI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배포·공시 등 방법으로 주가 부양하여 약 214억 원 부당이익 취득, 그 과정에서 의사서명 위조, 시험결과 조작한 보고서 등 식약처·MIFDA 제출하여 관련 허가 등 취득 [자본시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p> <p>② ㄱ○○, ㄴ○○ 등과 공모, '20. 10.~12. D사가 A사로 부터 검체수송배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사에 132억 원 손해[특경법위반(배임)]</p> <p>③ ㄴ○○, ㄴ○○ 등과 공모, '20. 10.~11. B사가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A사의 관계회사를 통해 고가 매입하여 B사에 35억 원 손해[특경법위반(배임)]</p>
3	ㄴ○○	C·D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p>① '19. 4. C사 자금 40억 원을 빼돌려 A사 무자본 인수를 위해 사용[특경법위반(횡령)]</p> <p>② ㄱ○○, ㄴ○○ 등과 공모, '20. 10.~12. D사가 A사로 부터 검체수송배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사에 132억 원 손해[특경법위반(배임)]</p>

			③ '20. 10.~21. 8. A사나 B사 등의 이익을 위해 D사 자금으로 B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A사 측 보유 B사 주식을 고가 매수하여 D사에 210억 원 손해 [특경법위반(배임)]
4	르○○	E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① '22. 12. ㄱ○○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서 압수영장 집행 중인 A사 관계사들의 이메일 삭제[증거인멸]